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5월 16일

CUOMO 주지사, 국영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경영자 보상금 또는 관리비를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된 법규들 발표

많은 국영 기업들의 문제로 대중의 논쟁에 대한 법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국영 비영리 및 영리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리비 및 경영자 보상금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제안된 법규들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된 법규들은 주 정부 자금이나 주에서 인가된 연방 정부 자금을 지급받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지나친 보상금 및 관리비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1월 Cuomo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 명령 38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2년 ~ 2013년 실행 예산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의 많은 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서의 지나친 보상 수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년 1,900만 달러의 공적 자금 - 연간 예산의 99% - 을 받는 한 제공자는 관리비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CEO에 주주 옵션으로 100만 달러에 더하여 22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이 법규들은 뉴욕주 납세자들이 보호받고, 대중의 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희 뉴욕주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내 최고입니다. 규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이 서비스 제공자들에 공신력을 심어주기 위한 이 법규들로 주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보다는 횡령하는 소수 제공자들을 찾아내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법규들은 내년 500,000달러 이상의 주 정부 보조금을 받고, 주 정부로부터 그들의 연간 예산의 최소 30%를 받는 제공자들을 포함합니다.

경영자 보상:

이 제안된 법규들은 국영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 정부 자금에서 199,000 달러 이상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다른 소스를 통해

Korean

199,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자는 해당 주 정부 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된 보상금 조사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상위 25%이하의 보상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자에게 199,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제공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 최소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교 데이터의 검증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경쟁상 필요하거나 제공자의 운영상 복잡성으로 제한금액을 초과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경우, 제공자들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이 제안된 법규는 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공자의 운영비 중 최소 75%가 관리비가 아닌 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해 쓰여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 비율은 2015년 85%에 이를 때까지 매년 5%씩 증가할 것입니다. 자본 비용은 이 제한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보고:

이 제안된 법규는 제공자들이 수령한 공적 자금, 경영자 및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들의 보상금 및 관리비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자들은 주 전역에 적용되는 간단한 양식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 필요성은 제공자들이 이미 따라야 하는 기존의 보고서 필요조건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시행:

오늘 제안된 이 법규들은 제공자들이 경영자 보상금 및 관리비 제안에 대한 면제 신청 과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제안된 법규는 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행정 심사 과정을 규정합니다. 이 심사 과정은 제공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고 벌금 및 조치 등이 취해지기 전 최소 6개월 동안 불이행을 시정할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제공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 제안된 법규는 해당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건 협회 (New York State Rehabilitation Association) 회장 겸 최고 경영자 Jeff Wise는, “NYSRA는 Cuomo 주지사의 보상금 관련 지시를 매우 바람직한 공공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주지사가 딱 맞는 접근안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들과 그들의 위원회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반면 대중의 돈을 관리할 책임을 시사하는 지시. 저희들은 모든 레벨의 재정 의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지사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격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적 서비스 위원회 사무 총장 Michael Stoller는, “Cuomo 주지사는 비영리 인적 서비스 부문이 주의 가장 필요한 분들을 돌보고 주의 경제 기구 중 하나로 비영리 인적 서비스 부문이 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협력하여 경영자 보상금 및 간접 관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는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및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공신력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논쟁 기간 동안 더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이 있지만, 이 기준은 도움이 필요한 저희 이웃과 가족 구성원들을 잘 보살피는 대부분의 비영리 제공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악영향을 끼치는 제공업자들”을 식별하는 올바른 균형을 도모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주지사 및 그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법규를 완성시키고, 세계 최고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애로운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회장 Lee Perlman은, “주지사는 비영리 단체가 공공 기금을 신중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GNYHA는 최상의 실천과 강력한 관리 방식에 대한 감독이 경영자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의 노고에 동의하며 이를 지지합니다. 저희 복잡한 세계적인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국내 시장 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지역 위원회 협회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Regional Councils) 회장 John A. Schuppenhaur는, “NYSARC는 항상 저희들이 공공 자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믿어왔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로 대중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실제 책임이 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이는 항상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및 그들의 가족들과 저희 임무에 너무도 중요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명확한 지침은 모든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가 그들의 신탁 책임을 준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된 법규는 13개 주 정부 기관에 의해 오늘 공개되고 있으며, 오는 5월 30일부터 완성되기 45일 전까지 대중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이에 적용되는 각 기관은 그들의 웹 페이지에 그들의 제안된 법규 초안을 게시할 것입니다. 이 제안된 기관들의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3.health.state.ny.us/dbspace/propregs.nsf/4ac9558781006774852569bd00512fda/fe1abd5a1b78ad8585257a00005afe2e?OpenDocument>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